#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천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337

발의연월일: 2025. 3. 25.

발 의 자:서천호·김선교·김예지

서명옥 • 박덕흠 • 이만희

최보윤 • 서지영 • 신동욱

이달희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정치망어업(定置網漁業)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시장·군수 ·구청장의 면허를 받도록 규정하고, 이에 따라 어촌계와 수산업협동 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(이하 "지구별수협"이라 함) 및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(이하 "업종별수협"이라 함)은 정치망어업 면허 를 받을 수 있음.

한편 현행법은 어업권은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되, 어촌계 계원이나 지구별수협 조합원 등이 그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이 소유하고 있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것은 임대차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은 업종별수협 조합원이 그 업종별 수협이 소유하고 있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임대차의 예외로 규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업종별수협이 정치망어업 면허를 취득하였음에도 그 조합원이 실질적으로 어업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.

또한 양식업권 취득 및 행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「양식산업발전법」은 업종별수협 조합원이 그 업종별수협이 소유하는 양식업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를 임대차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을 고려할 시 양식업권 및 어업권과 관련한 제도 운영상의 형평성・일관성이 결여된 측면이 있음.

이에 업종별수협 조합원이 그 업종별수협이 소유하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어업권의 임대차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등 현행제도상의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업종별수협 조합권의 권리 보장에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21조, 제32조 및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).

법률 제 호

###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 중 "어촌계나 지구별수협"을 "어촌계나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(이하 "업종별수협"이라 한다)"로 한다.

제32조 후단을 삭제하고,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37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로 보지 아니한다.

- 1. 어촌계의 계원이나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의 조합원이 그 어촌계나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이 소유하는 어업권을 행사 하는 경우
- 2. 어촌계의 계원,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의 조합원으로 구성 된 영어조합법인이 그 어촌계나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이 소 유하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경우

제36조제2항 중 "지구별수협"을 각각 "지구별수협 및 업종별 수협"으로 한다.

제37조제1항 중 "제8조"를 "제7조 또는 제8조"로, "지구별수협"을 "지

구별수협 및 업종별수협"으로 한다.

제38조 중 "지구별수협"을 "지구별수협이나 업종별수협"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아

제21조(어촌계 등의 어업권 담보 제21조(어촌계 등의 어업권 담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.

금지) 어촌계나 지구별수협이 금지) 어촌계나 지구별수협 또 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(이 하 "업종별수협"이라 한다)----

제32조(임대차의 금지) 어업권은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. 이 경우 어촌계의 계원, 지구별 수협의 조합원 또는 어촌계의 계원이나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으로 구성된 영어조합법인이 제37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촌 계 또는 지구별수협이 소유하 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것은 임 대차로 보지 아니한다. <단서 신설>

<신 설>

제32조(임대차의 금지) ------<후단 삭제> 다만, 다음 각 호
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로서 제37조에 따른 어장관리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 업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임

대차로 보지 아니한다.

1. 어촌계의 계원이나 지구별수 협 또는 업종별수협의 조합원 이 그 어촌계나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이 소유하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경우

#### <신 설>

- 제36조(어촌계 등의 어장관리) ① (생 략)
  - ②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제37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그 어장에 인접한 지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어촌계의업무구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그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행사한다.

## ③ (생 략)

제37조(어장관리규약) ① 제8조에 따라 어업권을 취득한 어촌계 와 지구별수협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장에 입어하거나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자격, 입어방법과 어업권의 행사방법, 어

2. 어촌계의 계원, 지구별수협
또는 업종별수협의 조합원으
로 구성된 영어조합법인이 그
어촌계나 지구별수협 또는 업
종별수협이 소유하는 어업권
을 행사하는 경우
(현행과 같음)
② 지구별수협 및 업종별수협-
지구별수협 및 업종별수협-
<u>.</u>
③ (현행과 같음)
제37조(어장관리규약) ① 제7조
<u> 또는 제8조</u>
 기구별수협 및
<u> </u>
<u> </u>

업의 시기, 어업의 방법, 입어 료(入漁料)와 행사료(行使料), 그 밖에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 장관리규약을 정하여야 한다.

## ② (생 략)

제38조(어업권 행사의 제한 등)
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36조
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
고 계원이나 조합원의 소득이
균등하게 증대될 수 있도록 대
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
당하는 자에게 어촌계 또는 <u>지</u>
구별수협의 어장에 대한 어업
권의 행사를 제한하거나 금지
할 수 있다.

② (현행과 같음)
제38조(어업권 행사의 제한 등) -
<u> </u>
구별수협이나 업종별수협